



결의안 제 4 호

예비보고서 및 직원권고안 수락을 위한 헌장 개정위원회 결의안.

2024년 5월 22일, 뉴욕시 시장은 뉴욕주 지방자치법 제 36(4)조 및 제 36(6)(d)조에 따라 헌장 개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뉴욕시 시장은 동법 제 36(4)조에 따라 뉴욕시 헌장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활동할 13인을 임명했으며,

위원회 직원 일동은 2024년 6월 24일에 발표한 헌장 개정위원회 예비보고서에서 일반인, 시정부 기관 및 공무원으로부터 동 위원회가 수렴한 증언을 토대로 몇 가지 중점 분야를 밝혔으며,

동 보고서에는 공공치안, 재정 책임, 정부 계약 및 정부 현대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대한 직원 권고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 결의안은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고려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헌장개정위원회 예비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수락하는 한편, 동 위원회가 2025년 11월 5일 총선거 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권고안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따라서 뉴욕시 헌장 개정위원회는 동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지역사회 이사회의 운영 강화 및 시정부 계약 절차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겠다고 결의하며,

선거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상당한 양의 증언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는 향후 헌장개정위원회에서 선거 개혁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회에 제시된 다양한 선거 개혁 방안을 신중하게 다루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겠다고 추가로 결의하며,

뉴욕시 헌장 개정위원회는 헌장 전문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공청회, 서면 증언, 본 결의안에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제기된 사항 일체를 고려할 것이며,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에서 고려할 모든 추가 정보를 취합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겠다고 결의하며,

뉴욕시 현장 개정위원회 직원들에게 상기 지침에 부합하고 위원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수정 사항을 수록한 최종 보고서와 투표 질문 및 요약문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될 총선에서 해당 제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 보고서와 투표 질문 및 초록을 2024년 7월 2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추가로 결의합니다.

날짜: 2024년 6월 26일

투표로 확정됨: 찬성 7 표, 반대 0 표, 기권 0 표